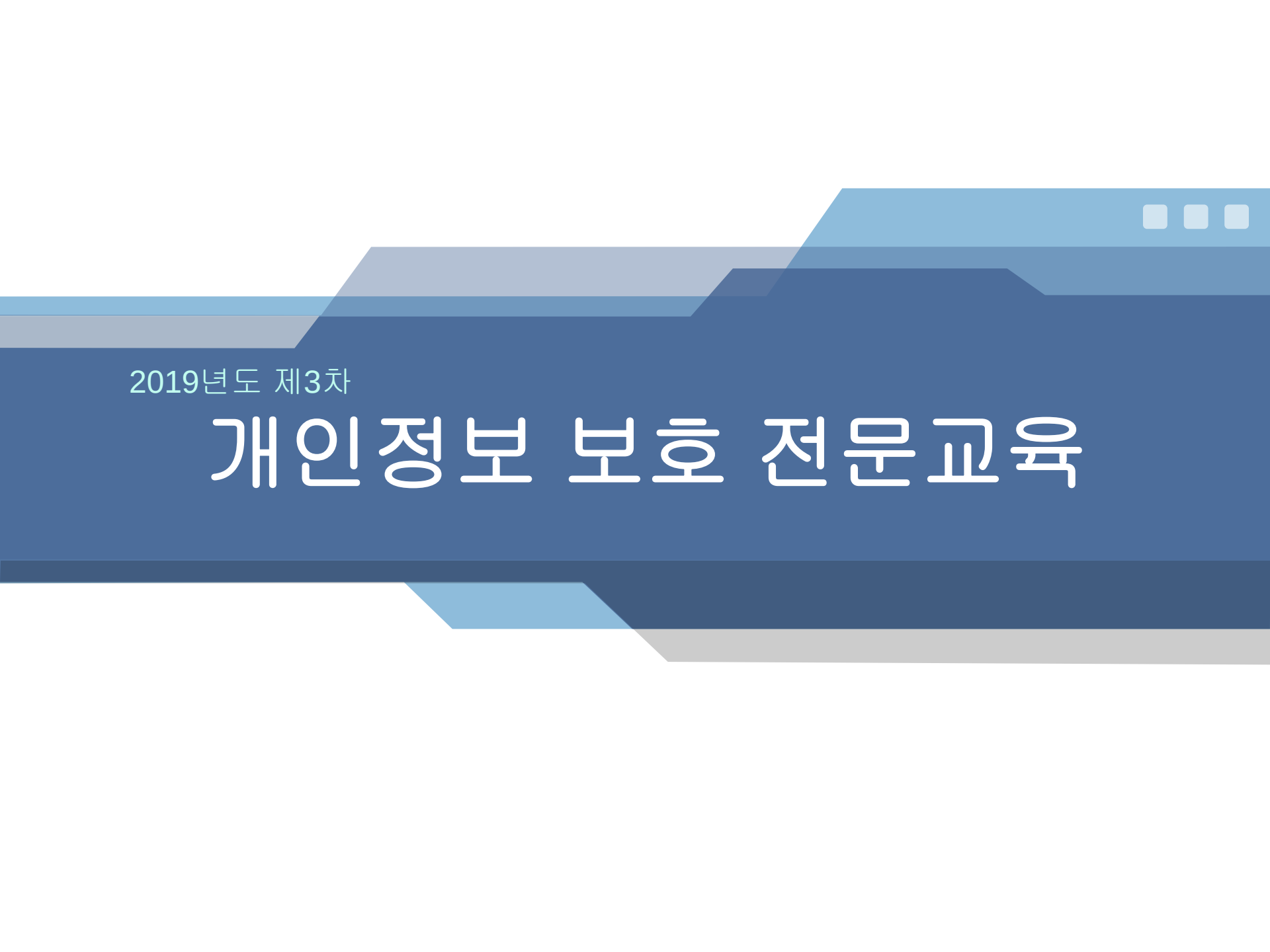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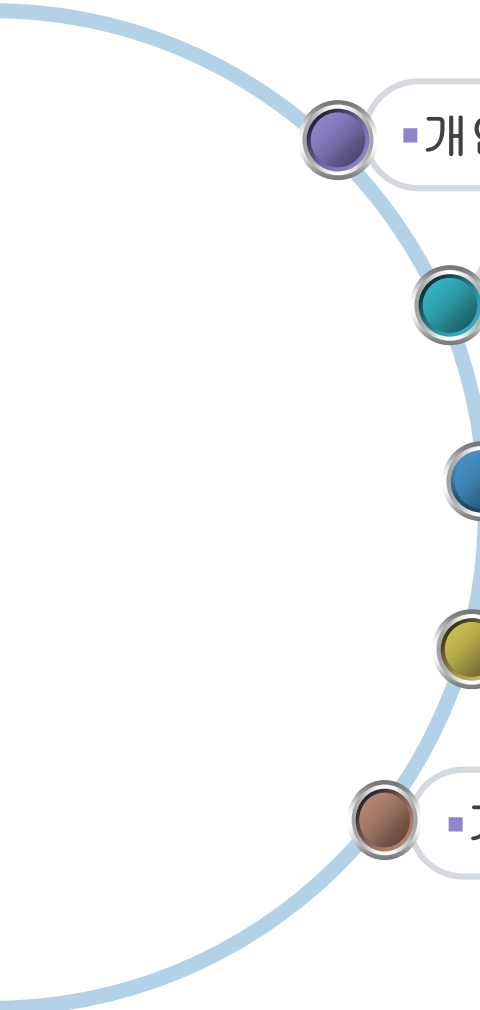




2019년도 제3차

#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 Contents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체계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유형과 적용제외



# I.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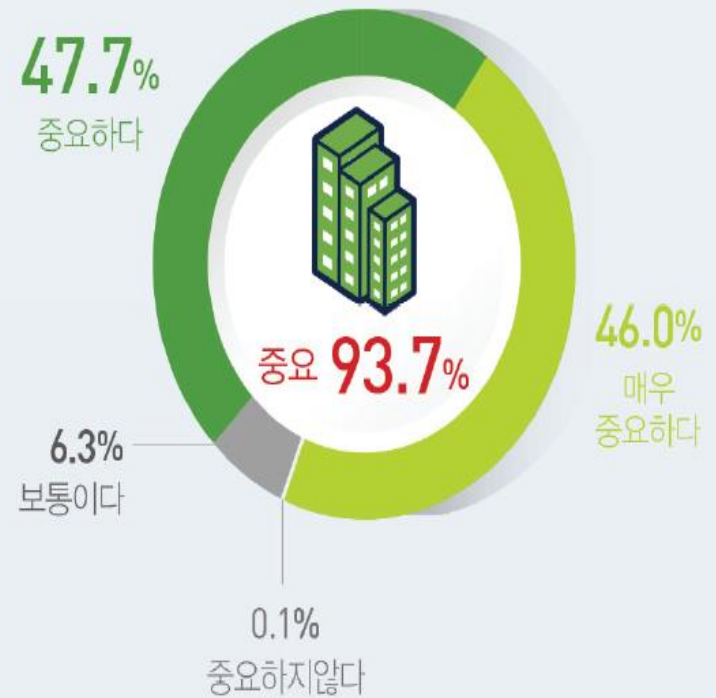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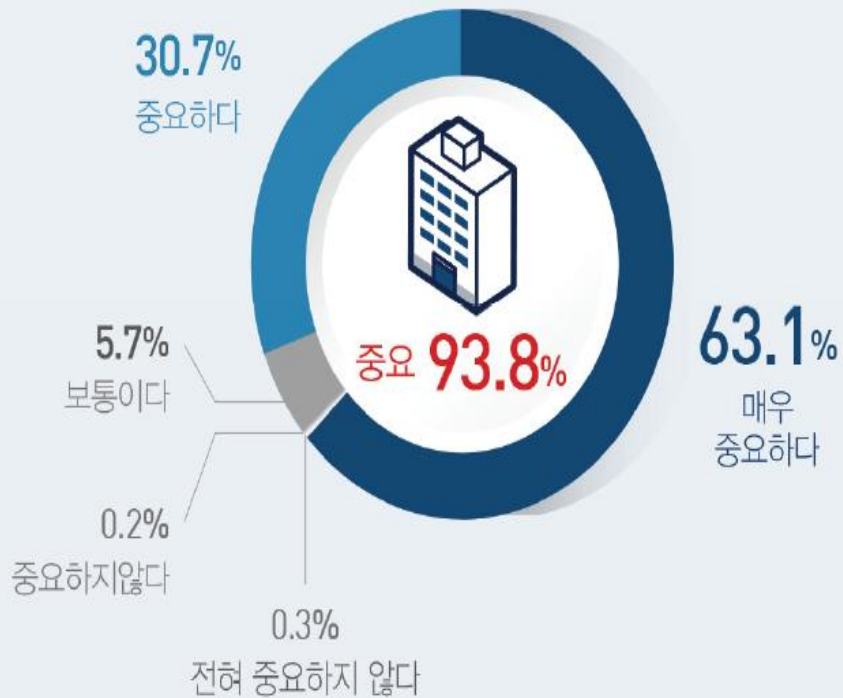
# 개인정보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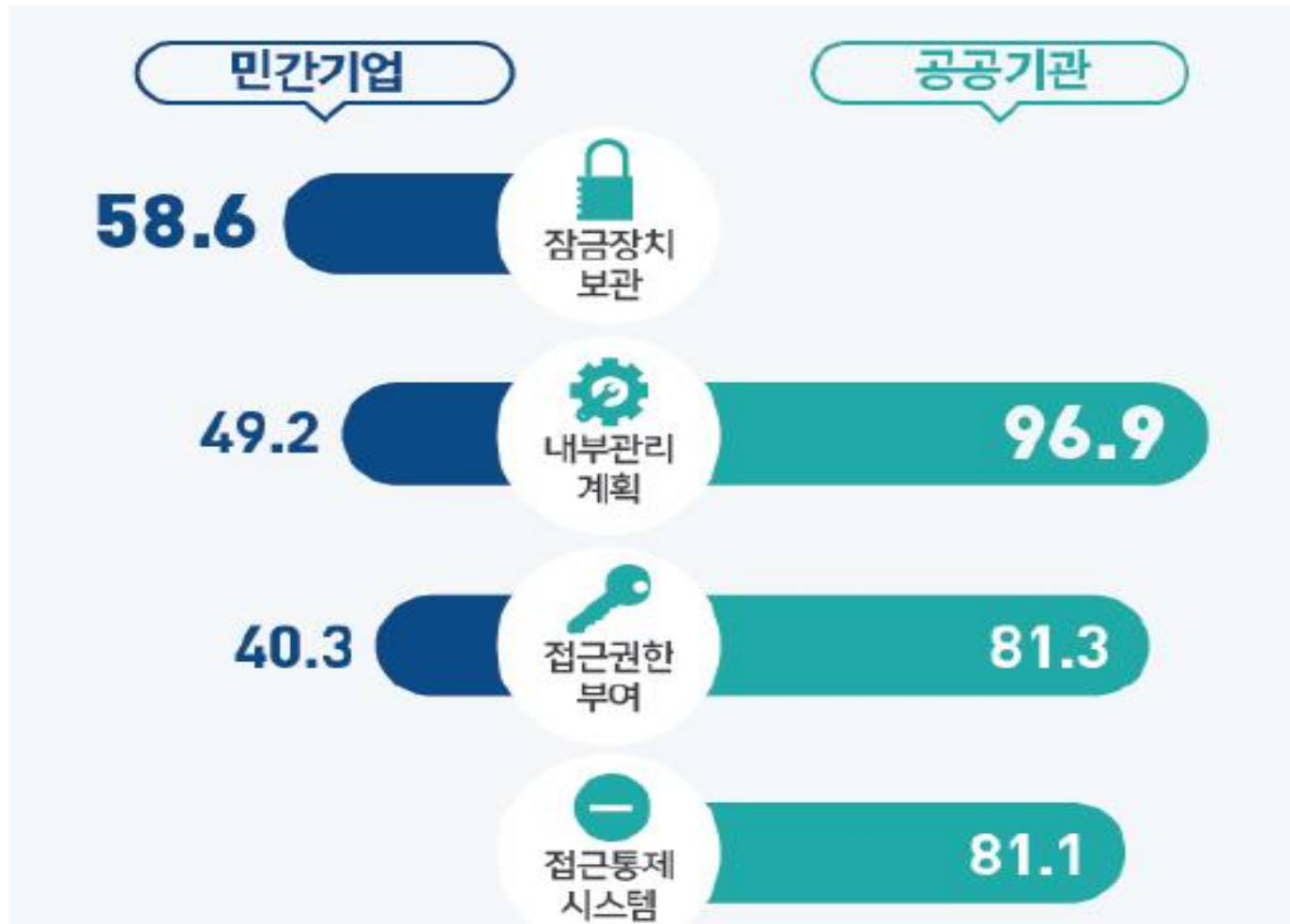
공공기관



민간기업



#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 TOP 3



#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 TOP 3



공공기관



민간기업

93.5%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78.3%



잠금장치 보관

72.1%



접근 권한  
차등부여 · 제한

72.9%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47.3%



잠금장치 보관

40.5%



보안프로그램  
설치 · 갱신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업무경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업무경력



공공기관



민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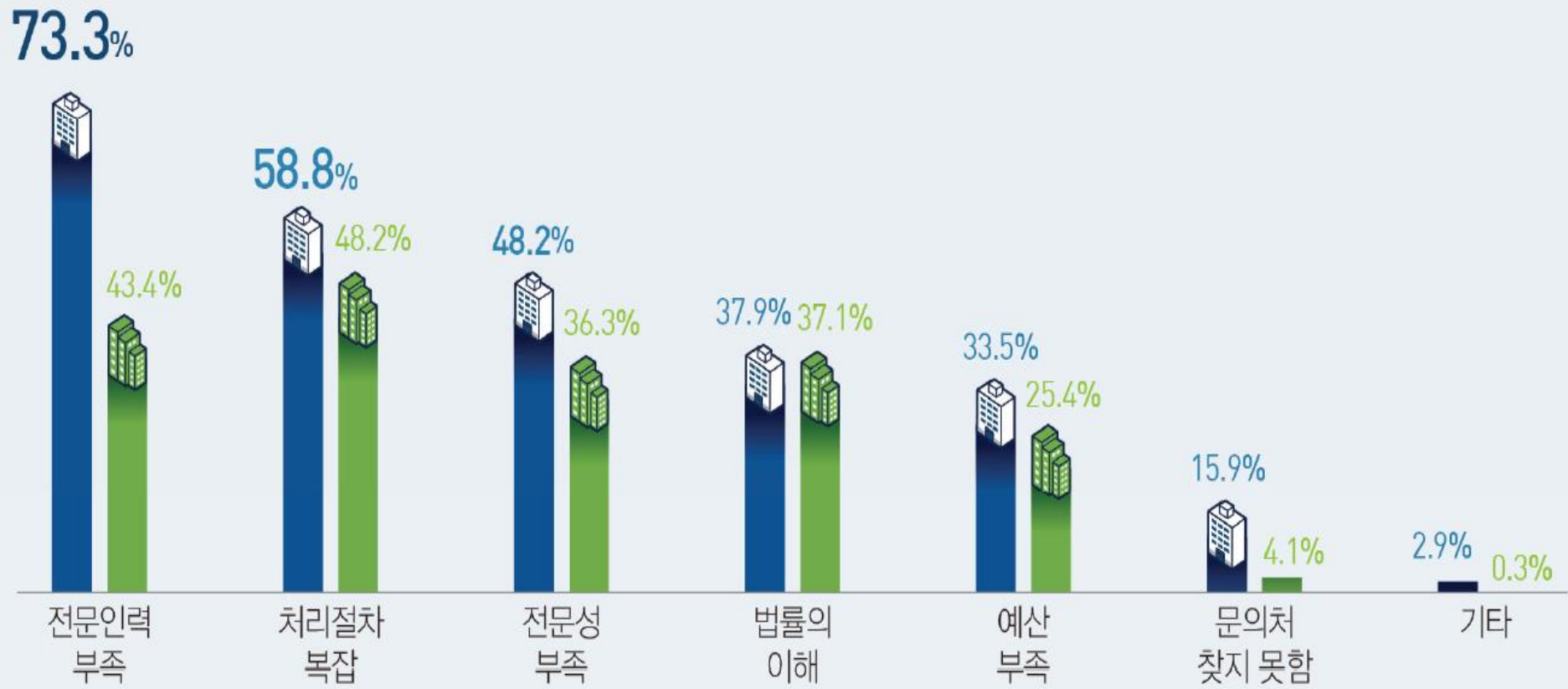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 애로사항(복수응답)



공공기관



민간기업



# 왜? 개인정보 보호인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3조 벌칙

- ✓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5조 과태료

- ✓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 현황

## 위반 내용별 행정 처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계     | 위반 내용별      |               |               |                |               |               |
|------|-------|-------------|---------------|---------------|----------------|---------------|---------------|
|      |       | 안전 조치<br>미흡 | CCTV<br>관리 위반 | 미동의/ 과도<br>수집 | 동의/고지<br>방법 위반 | 위·수탁 관리<br>위반 | 방침 수립<br>등 기타 |
| 과태료  | 748   | 413         | 33            | 45            | 83             | 85            | 89            |
| 시정조치 | 661   | 104         | 156           | 65            | 112            | 100           | 124           |
| 개선권고 | 1,026 | 282         | 352           | 143           | 52             | 45            | 152           |
| 계    | 2,435 | 799         | 541           | 253           | 247            | 230           | 365           |
| 비율   | 100%  | 32.81%      | 22.22%        | 10.39%        | 10.14%         | 9.45%         | 14.99%        |

출처:행정안전부,KISA, 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 2018, 39면.

# 행정상 공표 현황

## 행정 처분 결과 공표 내역

| 회차 | 공표일           | 기관 수 | 공표업체                                                                                                                      |
|----|---------------|------|---------------------------------------------------------------------------------------------------------------------------|
| 1차 | 2015. 8. 18.  | 1*   | 미래의료재단                                                                                                                    |
| 2차 | 2016. 2. 2.   | 5**  | (주)해태제과식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더베이직하우스, (주)애경유지공업, (주)파인리조트                                                                    |
| 3차 | 2016. 10. 26. | 7*   |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 구로성심병원, 가천대의대부속동인천길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대한병원, 평택성모병원                                                     |
| 4차 | 2017. 4. 26.  | 11*  | (주)대한항공,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비상교육, (주)정상제이엘에스, (주)파고다아카데미, (주)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주), 일성레저산업(주) |
| 5차 | 2018. 1. 8.   | 6*   |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                                                                 |
| 합계 |               | 30   |                                                                                                                           |

\*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25개소)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5개소)

# 개인정보 유출 사례1

## 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전자팩스 전송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8. 3. 6.(화) 17:00 경 A지사 B직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업무의 접수를 전화로 독려하던 중 서식을 보내 달라는 사업장 2곳에 서식이 아닌 **사업장 명단(387개소)**이 착오로 아래와 같이 전자팩스에 첨부·발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발생 \* 유출항목: 관리번호, 사업주명, 사업장명, 전화번호(일부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주소이며 이 중 **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

### 보험료지원승인 사업장 중 접수 불가 안된 사업장

은 일반서식으로 안내하고

| 연번 | 접수일자             | 지원신청서 | 관리번호 | 사업주 | 사업장명 | 3/5일 중 |
|----|------------------|-------|------|-----|------|--------|
| 3  | 2018-02-01 9:20  | 8     | 60   | 이길  | 셀    | N      |
| 4  | 2018-02-01 9:33  | 8     | 60   | 이길  | 대    | N      |
| 9  | 2018-02-01 10:26 | 8     | 61   | 이길  | 해    | N      |
| 10 | 2018-02-01 9:43  | 8     | 88   | 이길  | (주)  | N      |
| 11 | 2018-02-01 9:44  | 8     | 22   | 이길  | 영    | N      |
| 13 | 2018-02-01 9:47  | 8     | 60   | 이길  | 한    | N      |
| 18 | 2018-02-01 9:54  | 8     | 60   | 이길  | 평    | N      |
| 20 | 2018-02-01 9:56  | 8     | 60   | 이길  | 대    | N      |
| 21 | 2018-02-01 9:57  | 8     | 45   | 이길  | 열    | N      |
| 24 | 2018-02-01 10:12 | 8     | 13   | 이길  | 경    | 서송N    |
| 26 | 2018-02-01 10:17 | 8     | 60   | 이길  | 성    | N      |
| 30 | 2018-02-01 10:59 | 8     | 61   | 이길  | 주    | 이피N    |
| 31 | 2018-02-01 11:11 | 8     | 60   | 이길  | 대    | N      |
| 43 | 2018-02-01 13:18 | 8     | 60   | 이길  | 동    | N      |
| 48 | 2018-02-01 13:32 | 8     | 60   | 이길  | K8   | N      |
| 55 | 2018-02-01 14:03 | 8     | 26   | 이길  | 가    | N      |
| 59 | 2018-02-01 14:19 | 8     | 51   | 이길  | 주    | N      |

접수불가한 사업장

| 유선독려자 | 독려내용 | 전화       |
|-------|------|----------|
|       |      | 0 8275   |
|       |      | 0 8317   |
|       |      | 0 3-2507 |
|       |      | 0 2655   |
|       |      |          |
|       |      | 0 6901   |
|       |      | 0 3-9120 |
|       |      | 0 8500   |
|       |      | 0 3238   |
|       |      | 0 5257   |
|       |      | 0 1315   |
|       |      |          |
|       |      | 0 3-1926 |
|       |      | 0 1651   |
|       |      | 0 3461   |
|       |      |          |
|       |      | 0 5276   |

# 개인정보 유출 사례2

## □ 원인: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업로드

- OLE개체 삽입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 첨부문서의 그래프를 더블 클릭 시 그래프 작성을 위하여 사용한 개인정보 확인 가능



<첨부분서의 그래프>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
| 1  | 2013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개인현황 |    |    |           |    |        |     |     |      |    |     |   |
| 2  | 2013.04.05                        |    |    |           |    |        |     |     |      |    |     |   |
| 3  | 연번                                | 구분 | 지역 | 기관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거주지 | 거주지  | 단계 | 비고  |   |
| 4  | 1306                              | 지정 | 성동 | 세종한글교육센터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1  | 남자  |   |
| 5  | 502                               | 지정 | 서부 | 영원주부교실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3  | 남자  |   |
| 6  | 810                               | 지정 | 남부 | 영등포중앙학습관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2  | 남자  |   |
| 7  | 910                               | 설치 | 중부 | 교동초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2  | 남자  | 영 |
| 8  | 908                               | 설치 | 중부 | 교동초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3  | 남자  |   |
| 9  | 558                               | 지정 | 서부 | 영원주부교실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3  | 남자  |   |
| 10 | 422                               | 지정 | 서부 | 영원주부교실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1  | 남자  |   |
| 11 | 1400                              | 지정 | 성동 | 세종한글교육센터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3  | 남자  |   |
| 12 | 563                               | 지정 | 서부 | 영원주부교실    | 0  | 0      | 01  | 경기  | 영등포구 | 3  | 남자  |   |
| 13 | 1194                              | 설치 | 강남 | 영희초       | 0  | 0      | 01  | 경기  | 영등포구 | 3  | 남자  | 영 |
| 14 | 1432                              | 지정 | 성동 | 세종한글교육센터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1  | 외국인 | 영 |
| 15 | 908                               | 지정 | 중부 | 한국여성생활연구원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1  | 외국인 | 영 |
| 16 | 015                               | 지정 | 서부 | 영원주부교실    | 0  | 0      | 01  | 서울  | 영등포구 | 3  | 남자  |   |

<그래프 작성 시 사용한 자료>

# 개인정보 유출 사례3

## ▣ 원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 학부모의 휴대전화 정보 및 상담기록 정보가 담긴 서류와 일반 서류를 인근 고물상에 판매

학부모 휴대전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파기를 요청



인근 고물상



# 개인정보 유출 사례4

## □ 원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정보 노출

**6학년 수학여행 경비정산 안내**

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6학년 학생들의 수학  
여행이 잘차고 의미 있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수학여행  
경비정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3년 11월 19일(목) ~ 1  
2. 장소 : 제주도 일대  
3. 숙소 : 한화리조트  
4. 정산내역  
가. 정수인원 : 100명  
나. 테마수학여행 참가자 현황

| 학년     | 1반 | 2반 | 3반 | 4반 | 5반 | 6반 | 8반 | 계(명)           |
|--------|----|----|----|----|----|----|----|----------------|
| 최초신청인원 | 24 | 24 | 21 | 26 | 24 | 23 | 21 | 189            |
| 참가자    | 25 | 24 | 21 | 26 | 24 | 23 | 21 | 190(1반 전입생 1명) |
| 불참자    | 0  | 0  | 0  | 0  | 0  | 0  | 0  | 0              |

정산금액 : 25,000,000원(100명) + 240,000원(기타지원금) = 25,2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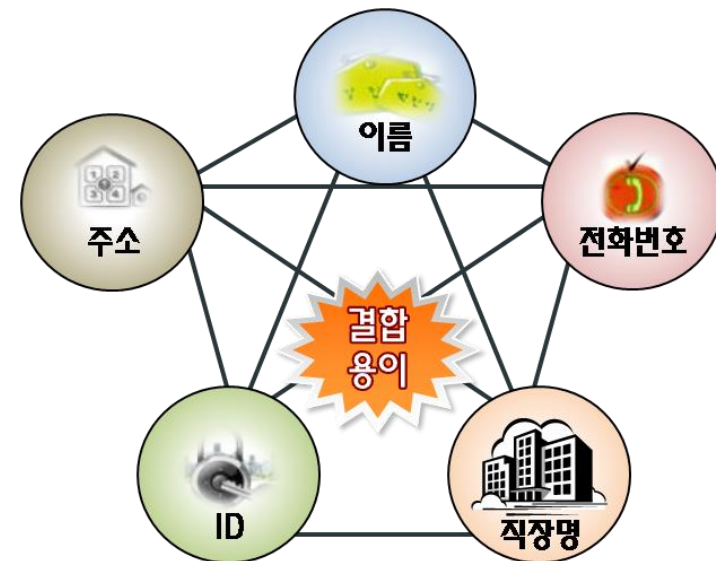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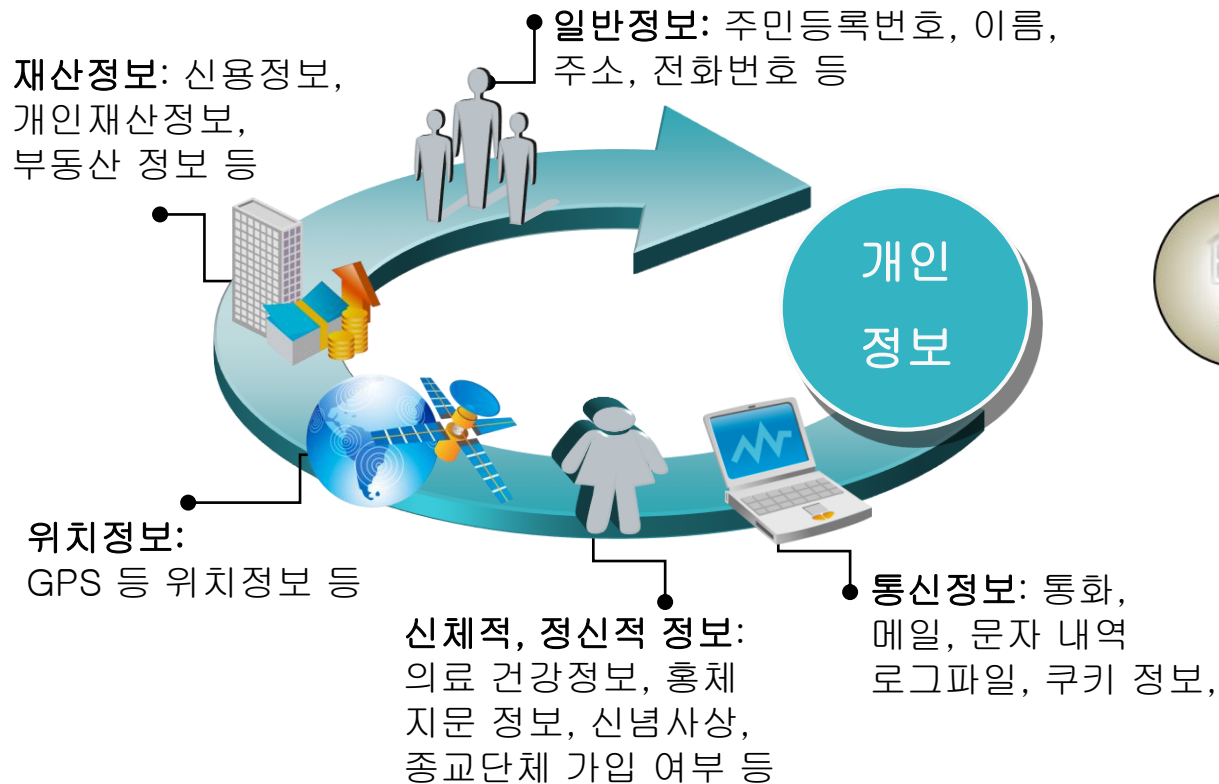
수학여행 경비지원 : 6- 기초생활수급자) 6- (한부모가정)  
총 428,600원(교육청지원 290,000원+학교발전기금 138,600원)

세부조

# 개인정보의 개념

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나) 정보의 임의성(모든 정보)

다) 식별 가능성(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결합 가능)  
라)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살아있는 사람



## 사자[死者]의 정보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이유

- 개인정보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함.
-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에 한함.

## 법인[法人]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배제

- 법인(法人)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 임원 현황, 자산 또는 자본의 규모, 주가, 영업실적, 납세실적, 영업비밀 등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음.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정보의 임의성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니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바이오정보 등) 및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교육상황, 재정상황, 진료 및 건강 상태 등)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되었거나 통계적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없고 식별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예> 특정 단체 임원들의 평균연봉, 특정 대학의 해당연도 졸업생의 취업률 등의 정보는 단지 전체적인 통계적 정보만을 보여줄 뿐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없는 정보

## 정보의 임의성

- 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모든 종류 및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정보의 임의성(모든 종류 + 형태 정보)

## 개인정보 해당 예

- 객관적 사실, 주관적 정보 모두 가능
  - ✓ 객관적 사실: 특정 개인의 신장, 체중, 나이 등
  - ✓ 주관적 정보: 직장에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거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 평가 등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평가 등
-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정보도 가능
  - ✓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정보의 처리 형식이나 처리 매체에도 제한이 없음.
  - ✓ 예: 컴퓨터 등에 저장된 문서, 파일 등 전자기(電磁氣)적 형태의 정보, 종이문서에 기록된 수기(手記) 형태의 정보, 녹음된 음성정보, CCTV에 찍힌 영상정보, 기타 문자, 부호, 그림, 숫자, 사진, 그래픽, 이미지, 음성, 음향, 영상, 화상 등의 형태로 처리된 정보도 모두 포함.

# 식별가능성(쉽게 결합하여, 합리적 결합)

## 식별가능성의 의미

-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
  - ✓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신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 ✓ 학교, 직장, 단체 등 소속된 곳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성명, 학번, 사번, 학년, 직급 등)
  - ✓ 기업의 고객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성명, ID 등 고객관리정보, 결제정보, 재화, 용역 공급을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등
-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와 연관되어 그 개인을 타인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
- 주의할 점: 한가지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존재
  - ✓ 예: 성명만 있는 경우에는 만약 동명이인이 존재한다면 특정인을 구별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개인정보의 식별성이란, 쉽게(합리적으로) **정보의 결합 또는 조합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구분, 구별하는 것을 의미**

# 쉽게 결합하여, 합리적 결합의 의미

## 입수가능성/결합가능성의 의미

- ‘쉽게 결합하여’ :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 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 이 높아야 함 의미
- **입수가능성**: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결합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음
- ✓ 공유 · 공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 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01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02

##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03

##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04

##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05

##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06

##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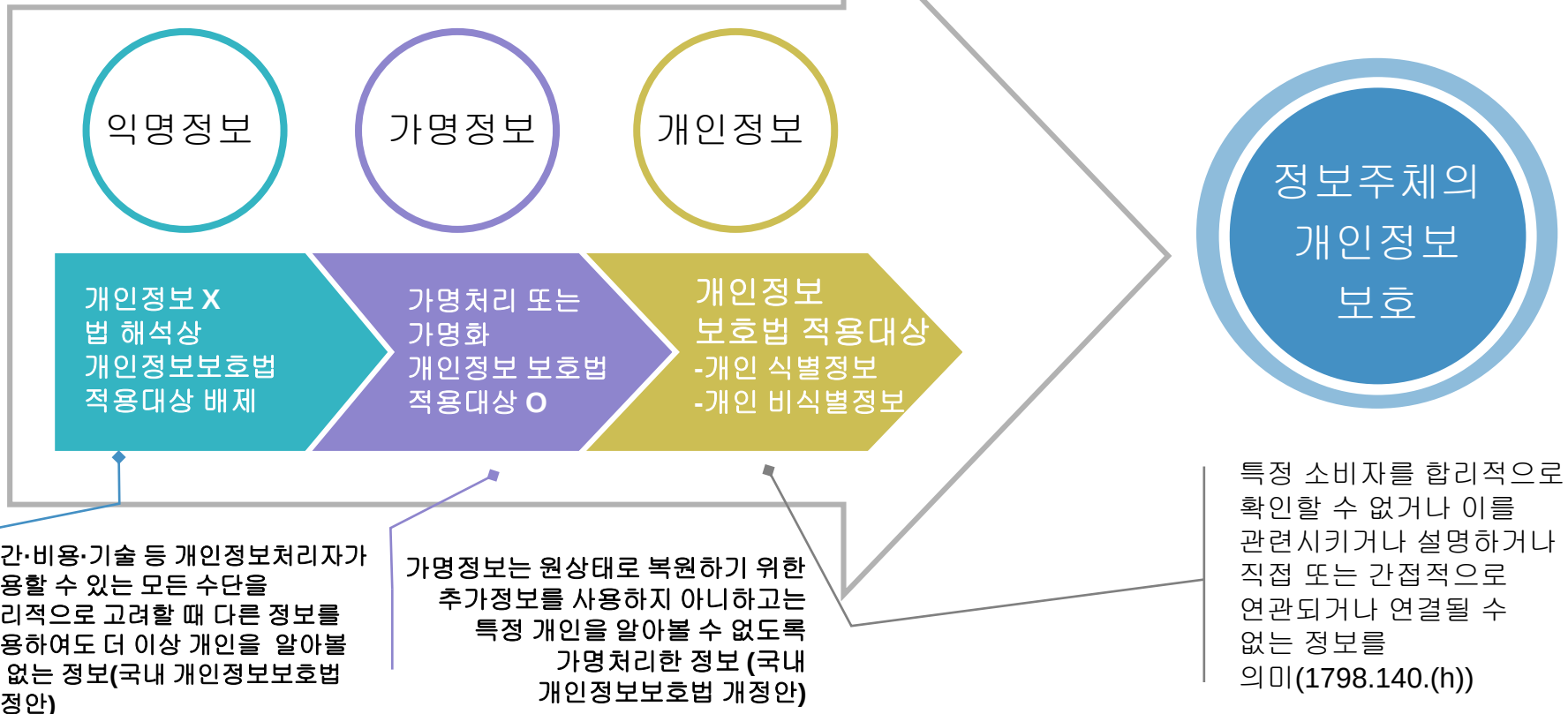
# 개인정보의 범위

| 등급  | 등급설명                                                              | 분류          | 대상 개인정보                                                                                                                                                                                                                                     |
|-----|-------------------------------------------------------------------|-------------|---------------------------------------------------------------------------------------------------------------------------------------------------------------------------------------------------------------------------------------------|
| 1등급 | 그 자체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br>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li> <li>※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li> </ul>                                                                                                                      |
|     |                                                                   | 민감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적(性的) 취향, 유전자 검사 정보, 범죄 경력정보 등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li> </ul>                                            |
|     |                                                                   | 인증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밀번호, 바이오정보(홍채, 지문, 정맥 등)</li> <l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li> </ul>                                                                                                                             |
|     |                                                                   | 신용정보/금융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li>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6조, 제21조, 별표2 등</li> <l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및 관련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제2항</li> </ul> |
|     |                                                                   | 의료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상태, 진료기록 등</li> <li>※ 의료법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li> </ul>                                                                                                                                   |
|     |                                                                   | 위치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위치정보 등</li> <l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등</li> </ul>                                                                                                                                     |
| 2등급 |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개인 식별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li> </ul>                                                                                                                                                    |
|     |                                                                   | 개인 관련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력, 직업, 키, 몸무게, 혼인여부, 가족상황, 취미 등</li> </ul>                                                                                                                                                          |
| 3등급 | 개인식별정보와 조합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                                | 자동생성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P주소, MAC주소, 사이트 방문기록, 쿠키 등</li> </ul>                                                                                                                                                               |
|     |                                                                   | 가공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성 정보, 가입자 성향 등</li> </ul>                                                                                                                                                                          |
|     |                                                                   | 제한적 본인 식별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번호, 사번, 내부용 개인식별정보 등</li> </ul>                                                                                                                                                                    |

# 가명정보/익명정보(국내외 적용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2018년 6월 28일 소비자(Consumer)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특정 소비자(consumer) 또는 가구(household)를 식별하고 묘사하거나, 관련 있거나 관련될 수 있거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1798.140.(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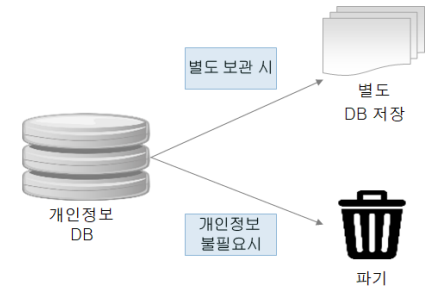
-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58조의2 신설)
  - 종전에는 법 해석으로 적용을 배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명문화하고자 함
  - EU의 GDPR은 전문 제26항에서 익명정보의 GDPR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익명처리 여부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싱글 아웃(Single out) 여부 모두 평가(출처: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https://www.dataprotection.ie/docs/Anonymisation-and-pseudonymisation/1594.htm>.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16621,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명정보 개념 명시 (제2조제1호 개정)**
  - 가명정보는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 \*가명처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 과학적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단,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 분리보관



## 분리보관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은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분리 보관의 방법**: 크게 물리적 분리, 논리적 분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물리적 분리보관 : 통신망, 장비 등을 물리적으로 이원화하여 분리보관한 개인정보에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와 접속이 불가능한 컴퓨터로 분리하는 방식
  - 논리적 분리보관 : 물리적으로 하나의 통신망, 장비 등을 사용하지만 가상화, 접근통제 등의 방법으로 분리보관한 개인정보에 접근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

#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

## 법규범의 적용 순서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1 상위법우선의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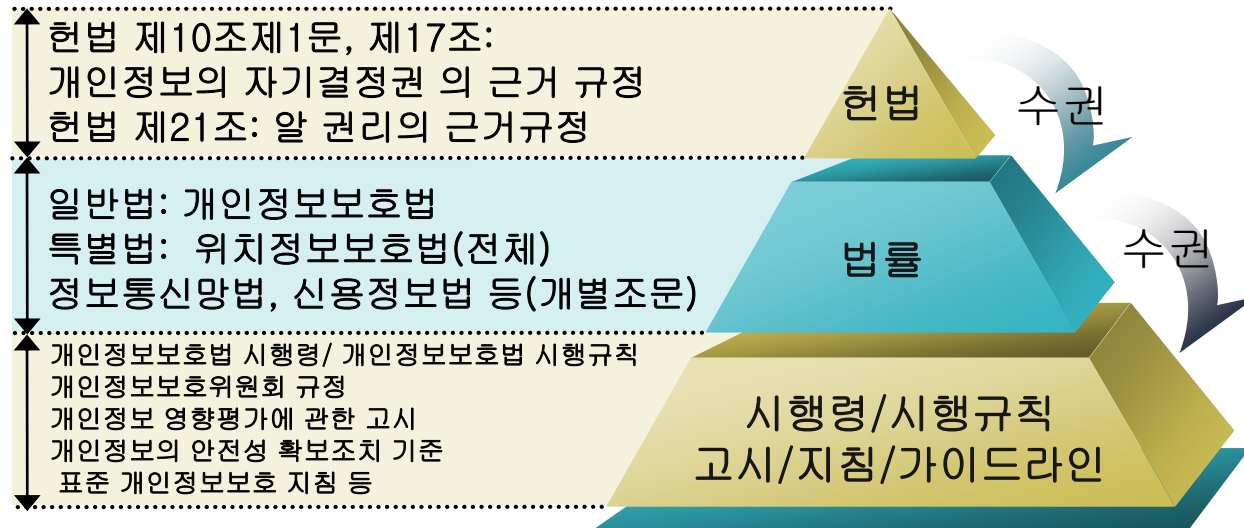
법규범 간에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됨.

### 2 특별법우선의원칙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

### 3 신법우선의원칙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 신법이 우선 적용됨.



※조례: 지방자치의회에 의해 제정되며,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무를 규율하며, 헌법과 법령 등의 수권이 있어야 함.

\* 수권[授權]: 상위규범이 하위규범(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틀 안에서 입법 또는 집행의 권한을 주는 것



##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체계

# 개인정보 보호법 추진 체계

## 운용 체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시행: 2016년 7월25일



대통령

헌법기관

-개별 기본계획 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사항 심의 의결  
-기본계획 수립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선, 해석 등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기타 부처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기타 민간분야 총괄

정보통신 분야

금융,신용 분야

보건복지, 교육,법무,  
노동 등 소관 분야

## 법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기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헌법  
기관

공공부문

정보통신

금융/신용

교육

보건복지

법무,노동,관광 등  
소관분야

민간부문

#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 9장 76개 조문, 부칙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실태점검, 자율규제촉진 등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제도 등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 제8장 보칙 - 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 제9장 벌칙 - 벌칙, 몰수 추정, 과태료 및 양벌규정 등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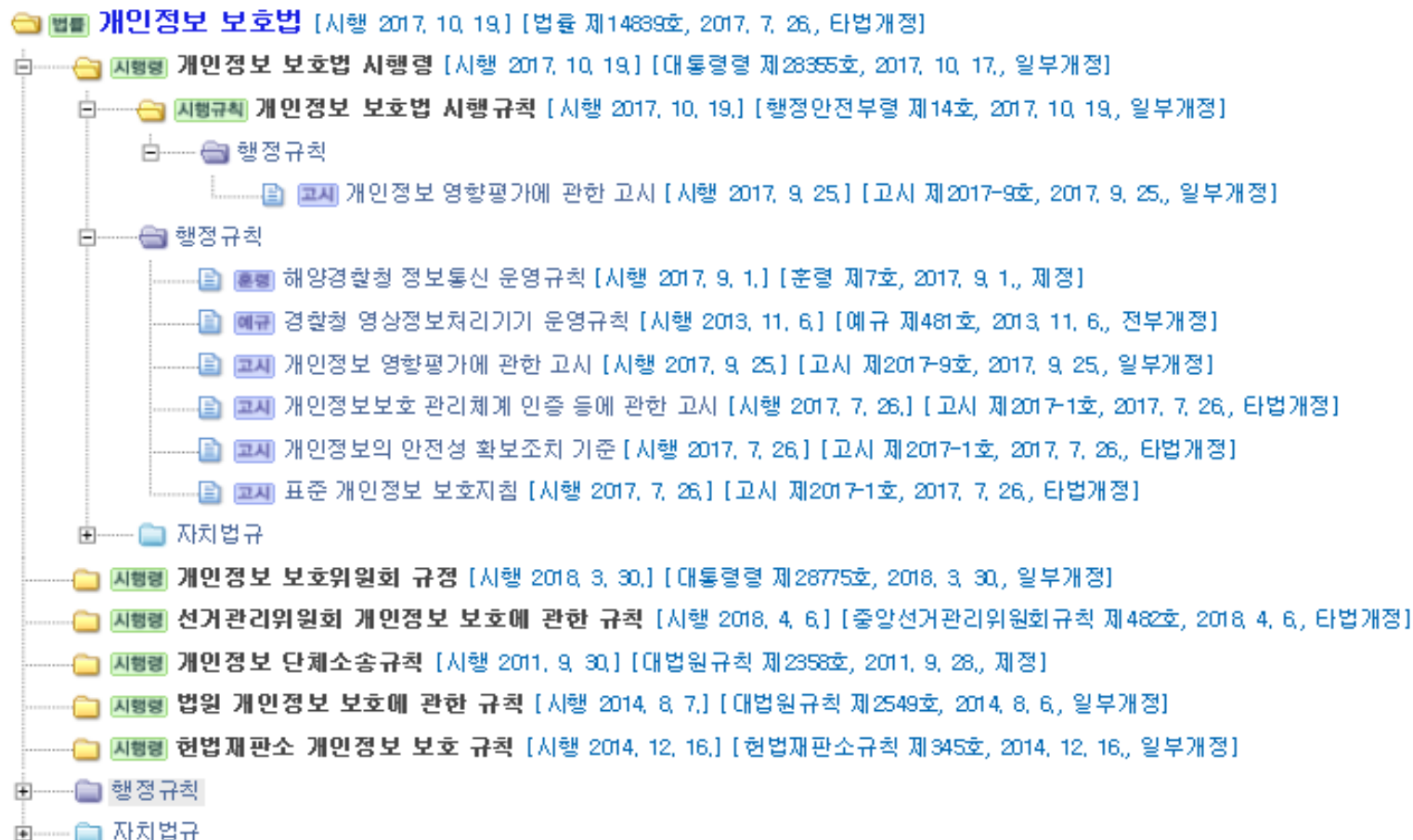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규범



| 구 분   | 하 위 규 범                                                                                                                                                                                                                                                                     |
|-------|-----------------------------------------------------------------------------------------------------------------------------------------------------------------------------------------------------------------------------------------------------------------------------|
| 시행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li> <l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li> <li>•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358호 / 2011.9.30) 등</li> </ul>                                                                          |
| 시행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li> </ul>                                                                                                                                                                                    |
| 고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7-1호, 2017.7.26.)</li> <l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17-1호, 2017.7.26.)</li> <li>• 개인정보보호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7-1호, 2017.7.26.)</li> <li>•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17-1호, 2017.7.26.)</li> </ul> |
|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고시 제2017-1호, 2017.7.26)</li> </ul>                                                                                                                                                                                   |
| 가이드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2015.1.15.)</li> <li>•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2015.1.15.)</li> <li>•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2014.8.)</li> <li>•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1.)</li> <li>• 학원 교습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5.12.) 등 다수</li> </ul>     |

# 개인정보 보호법령 체계도

## ■ 상하위법





### III.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1

## (정보통신망법 vs.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5호는 제2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1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근거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어야 하고 고소인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이용자’이어야 하며, 청구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어야 함

### 판시사항

청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내지 이 사건 근거조항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청구인과 고소인의 이 사건 인터넷 블로그의 이용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거조항 위반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1

## (정보통신망법 vs. 개인정보보호법)

### 판단

#### (1) 청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사로서 병원 홍보를 위하여 광고 등을 할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운영하였고, 위 인터넷 블로그에 코 성형수술 전후의 고소인의 사진을 게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영리의 목적, 즉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 (2) 고소인이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참조). 그런데 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기록상 고소인이 위 성형수술 전후에 걸쳐 청구인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거나 또는 위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여 상담을 하거나 진료예약을 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이 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음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로소 위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근거조항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소인의 사진은 청구인이 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순수하게 오프라인(off-line) 의료행위(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2 (개인정보처리자 vs. 개인정보취급자)

### 사건개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한  
기소유예처분 사건(헌재 2018. 4. 26. 2017헌마711, 공보 제259호, 781 [인용(취소)])

- (1) 청구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공단에서 감사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2) 청구인은 2013. 2. 10. 위 공단 소속 직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공단 산하 8개 사업소 전 직원들 약 300명에게 자신의 범죄경력을 자진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이 전자우편에는 비위유형, 처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직원의 경우 비밀을 보장하고 정상참작을 해 주겠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대면조사하여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3) 이에 직원 15명이 자신의 범죄경력 21건을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집하여 ‘사법기관 처분내용 자료수집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직장 내 청렴교육 시간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직원들의 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죄유형과 건수만 포함되었으며, 강의 시간에도 소속이나 실명 등은 밝히지 아니하였다.
- (4) 인천○○공단 소속 직원인 임○기는 청구인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8.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6)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2 (개인정보처리자 vs. 개인정보취급자)

-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본문(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이라 한다)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근거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판시사항

청구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2

## (개인정보처리자 vs. 개인정보취급자)

### 판단

#### (1) 청구인이 이 사건 근거조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한 다음(제3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제15조 내지 제22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내지 제28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내지 제34조의2)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고 개념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6호 나목,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2) 청구인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제28조 제1항 참조)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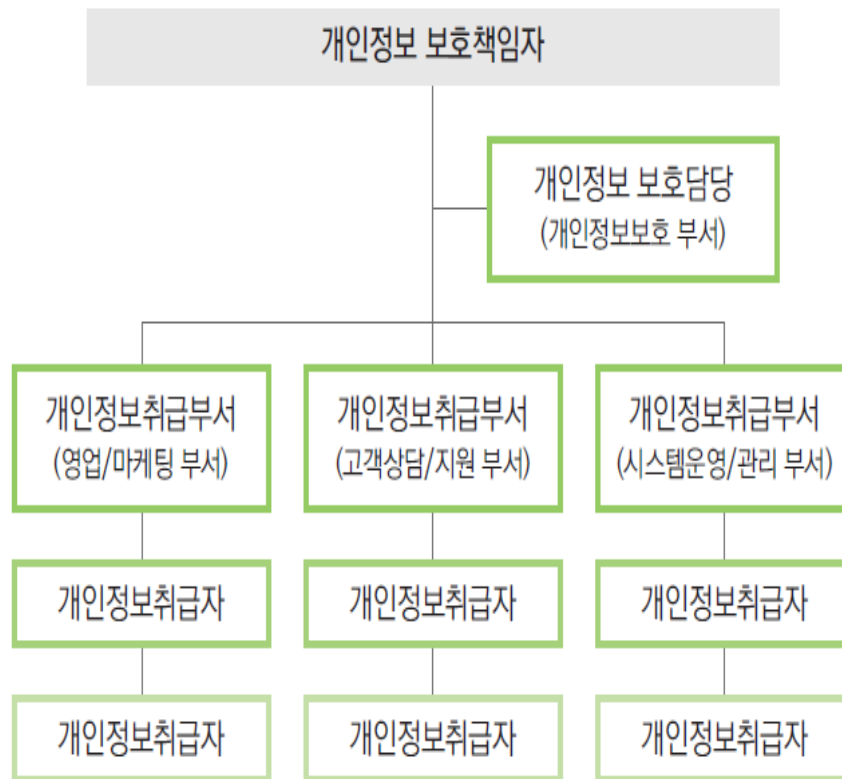
위 인정사실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개념 정의 및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천○○공단이고,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감사팀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3)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거조항 위반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조직

##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도 예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 개인정보취급부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출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40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3

## (개인정보 제공요청 vs. 제3자 제공 행위)

가. 피청구인 B경찰서장이 2013. 12. 18. 및 2013. 12. 20. 피청구인 A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라. A공단이 2013. 12. 20. B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판시사항

1. 피청구인 A공단이 2013. 12. 20. 피청구인 B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3

## (개인정보 제공요청 vs. 제3자 제공 행위)

### 판단근거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와 범죄수사의 신속성·효율성 확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보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사상의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는 ② 수사 목적의 중대성, 수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가 침해받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침해받는 정도, 수사 내용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와의 관련성 등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3

## (개인정보 제공요청 vs. 제3자 제공 행위)

### 판단근거

#### 민감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령 규정들은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민감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모두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각 처리 방식의 고유한 요건을 구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결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령 규정들에 따라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3

## (정보 목적외 제3자 제공행위 적법성 판단요건)

### 판단근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A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처리주체의 변경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특히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감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처리단계별 주요조치



처리  
단계

수집  
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등)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저장  
관리

- 인터넷상 주민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제공  
위탁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 개인정보 처리위탁, 영업양도 등 개인정보 이전

파기

- 개인정보 파기
  - ✓ 전자적 파일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영구 삭제
  - ✓ 인쇄물 등: 파쇄 또는 소각(기타 세부 사항 행안부 장관 고시)

개인정보처리방침(제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처벌규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폭넓게 인정하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차등화

## 개인정보 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주의: 목적외 이용제공의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가 적용 가능

###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적외 이용·제공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공공기관만 해당 >

5.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헌법기관규칙에 의해서만)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처벌규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법 제16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금지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요내용의 표시 방법



## 정보주체에게 홈페이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때

1. 글자 크기는 최소 3mm이상의 크기로 하되 중요내용은 20%이상 크게 표시
2. 화면배경과 글자색은 이용자가 읽기 쉽도록 조합하여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파란 색과 굵은 글씨를 사용하여 표시
3. 중요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

## 정보주체에게 종이문서를 통하여 동의를 받을 때

1. 글자 크기는 최소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작성하되 중요내용은 20%이상 크게 표시
2. 줄간격은 되도록 130%이상 설정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와 밑줄을 사용
3. 중요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

#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
  -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정 2016.3.29., 2017.7.26.>

예외) ①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③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안부령으로

기 보유 주민등록번호 중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파기

처벌규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법 제24조의 2 제2항)
  - ※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 i-PIN(온라인), My-Pin(오프라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적법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 근거 법령                      |                               | 내 용                                                                                                                    | 해당 사업자                          |
|----------------------------|-------------------------------|------------------------------------------------------------------------------------------------------------------------|---------------------------------|
| 금융실명<br>거래법                | 제3조,<br>시행령<br>제3조            | ·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가짐<br>※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은행, 보험회사,<br>카드회사 등등            |
| 전자금융<br>거래법                | 제16조,<br>시행령<br>제11조          | · 5만 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 필요                                                                                    | 전자화폐 발행<br>금융기관 또는<br>전자금융업자    |
| 부가가치<br>세법                 | 제32조,<br>시행령<br>제67조          |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재화 또는 용역을<br>공급하는 자<br>(일반 사업자) |
| 소득세법                       | 제145조,<br>제164조               |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br>·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시, 기타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원천징수의무자                         |
| 의료법                        | 시행규칙<br>제9조,<br>제12조,<br>제14조 | · 병원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원                              |
| 자격기본<br>법                  | 시행규칙<br>제6조                   | · 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관리 목적 및 자격증 기재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능                                                                     | 공인자격관리자                         |
| 고용보험<br>법                  | 시행령<br>제41조,<br>시행규칙<br>제60조  |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주 또는<br>훈련기관                  |
| 전자서명<br>법                  | 제15조,<br>시행규칙<br>제13조의2       | · 공인인증서 발급시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 공인인증기관                          |
| 벤처기업<br>육성에<br>관한<br>특별조치법 | 제15조,<br>제15조의4               | ·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시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벤처기업                            |

| 근거 법령       |               | 내 용                                                                                                                                 | 해당 사업자                                       |
|-------------|---------------|-------------------------------------------------------------------------------------------------------------------------------------|----------------------------------------------|
| 방송법         | 시행령<br>제66조의3 | ·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요금 반환에 관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예방을 위한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유료방송을 하는<br>방송사업자                            |
|             |               | · 이용 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유료방송을 하는<br>방송사업자-<br>중계유선방송사업자<br>음악유선방송사업자 |
| 전기통신<br>사업법 | 시행령<br>제65조의2 | · 취약계층 등에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요금 반환에 관하여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예방을 위한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기간통신사업자,<br>별정통신사업자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시령 2013.6.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6호, 2013.6.14.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헌법기관 규칙 예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2015.7.17>

[본조신설 2011.10.19]

#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구분 >

| 구분      | 업무위탁                        | 제3자 제공          |
|---------|-----------------------------|-----------------|
| 관련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 처리목적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br>처리(수탁업무 처리)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 |
| 예측가능성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
| 관리·감독책임 | 위탁자 책임(사용자 책임)              | 제공받는 자 책임       |
| 손해배상책임  |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 제공받는 자 부담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법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정보주체의 동의, ②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 제공 가능

※ **제공** : 저장매체, 출력물,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제3자와의 공유 등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제1항 참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사항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의 절차

## 사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업무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판단

업무 절차 및 제공 여부 등을 규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참고

### 자료요청 문서접수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근거, 이용항목, 이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제공여부 검토

- 자료 제공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
- ※제공 요건에 해당하여도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정보제공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수집 목적 내에 한하여 정보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로 제공 시 파일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 및 보조기억매체(보안 USB, CD 등)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파일 인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징구 필요

### 사후관리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목적 외 용도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일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 필요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가능사유...

사회보장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감사원 직무감찰 목적의 자료 요구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 검찰청, 경찰청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 제공 시 위반사례

## <등록 누락>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의 준수절차에 따르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한 사례

## <동의서 내용 부적정>

- 법률의 근거가 아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에 의한 제공 시 동의서에 필수 고지항목(5개\*)이 누락된 사례

\* 5개: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 <제공 법적 근거 확인 소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제공할 수 있으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제공한 사례** (다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에 제공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출처 등의 고지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하면 된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 개인정보의 ① 수집 출처, ② 처리 목적, ③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알려야 함.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관리하고 있어야 함.

##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 i)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ii)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① 수집 출처, ② 처리 목적, ③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을 (시기 및 방법을 포함)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기관의 처리방침에 대한 사항
- 게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
- 처리방침에 표시할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붉은색 표시 부분: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

# 안전성 확보조치

## 동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0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02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0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 이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 내부관리 계획 수립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유형1**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유형2** 12~14까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유형3** 1~15까지를 포함하여야 함

- |                                               |                                                     |
|-----------------------------------------------|-----------------------------------------------------|
| <b>1</b>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b>9</b>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b>2</b>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b>10</b>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b>3</b>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b>11</b>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b>4</b>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b>12</b>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 <b>5</b>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b>13</b>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b>6</b>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b>14</b>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b>7</b>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b>15</b>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b>8</b>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

▶ 위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구 분                    |                     |                                   | 암호화 기준                                                                                                                   |
|------------------------|---------------------|-----------------------------------|--------------------------------------------------------------------------------------------------------------------------|
| 정보통신망,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송신 시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고유식별정보 |                                   | 암호화 송신                                                                                                                   |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 시       | 비밀번호                |                                   | 일방향(해쉬 함수) 암호화 저장                                                                                                        |
|                        | 바이오정보               |                                   | 암호화 저장                                                                                                                   |
|                        |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암호화 저장                                                                                                                   |
|                        |                     | 인터넷 구간,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암호화 저장                                                                                                                   |
|                        |                     |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br>내부망에 저장 | 암호화 저장 또는 다음 항목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적용범위를정하여 시행 가능<br>※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br>※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저장시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고유식별정보 |                                   | 암호화 저장<br>※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br>※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 암호화                                                           |

-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유형1 및 유형2는 아니할 수 있음)

출처: KISA

# 접속기록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관리



## 계정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 접속자 정보

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접속 주소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

#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

## \* 고려사항

- 관리용 단말기의 종류에 따른 특성, 중요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빈도 및 수행업무
-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악성코드 전파 등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 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출처: KISA

#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 ①개인정보파일의 명칭, ②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③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④개인정보의 처리방법, ⑤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⑥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의무의 예외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영향평가 실시 대상 개인정보파일(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

- ①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5만 명 이상
- ② 내외부에서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
- ③ 일반적인 개인정보파일 : 100만 명 이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③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④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⑤ 개인정보 보유기간

# 물리적 안전조치

-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유형1 및 유형2는 제12조를 아니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파기조치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법 제21조, 표준지침 제55조)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파기
  - ▶ 소비자 분쟁처리 관련 기록(3년), 요금정산(5년), 계약 및 청약철회(5년) : 전자상거래법

### [ 파기 방법 ]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폐기

- 전자적 파일형태 :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이나 삭제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파기
- 기록물, 인쇄물, 서면 : 파쇄 및 소각

- 법에 보유 근거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2년 이내 보유 및 파기 (~'16. 8. 6)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공기관의 경우, 파기 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검토 필요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운영 (법 제25조제1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 ]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예방 및 수사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녹음기능 사용 금지 (법 제25조제5항)

## 처벌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내판 설치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제4항, 영 제24조)

### [ 안내판 기재사항 ]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IV.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권 보장

## 내용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음 (법 제35조~제37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응조치 (영 제41조)
  - 내용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연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대응조치 (영 제43조)

- 내용적으로 10일 이내에 조치

※ 처리정지권 (법 제37조):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 [ 열람 제한사유 ]

- 1) 법률의 규정
- 2)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의 조세부과 징수·환급, 교육기관 성적평가·입학자 선발, 채용 시험·보상금 산정·감사조사 업무

#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 < 양 제도 비교 >

| 구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법정 손해배상제도                                 |
|------|-----------------------------------------|-------------------------------------------|
| 적용요건 | 기업의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 | 기업의 고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경우          |
| 입증책임 | 기업이 고의 중과실 없음을 입증<br>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 기업이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br>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의 입증책임 면제 |
| 구제범위 |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 사실상 피해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
| 배상규모 | 실제 피해액의 <b>3배 이내</b> 배상                 | <b>300만원 이하</b> 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
| 적용시기 | 개정법 시행 이후 유출사고                          |                                           |
| 적용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

# 개인정보 유출통지



##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 개인정보 유출사실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 (통지 사항) ①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②유출된 시점 및 경위, ③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④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정보주체에게 피해발생 시 신고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
  - (통지 방법)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

##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 신고방법 :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 유출 및 신고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별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적인 유출신고의 절차는 마련하여 함)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 관리부서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법 제34조)

## 01

###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 시 한 |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 통지 항목 |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 시점과 그 경위

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 방법

④ 기관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⑤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8호(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목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 02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 접속 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 긴급 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 지원 요청

\*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법 제34조)

## 03

###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 신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9호(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통지 결과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04

###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거나 7일 미만 게재하는 경우 : **시정명령**



## V.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유형과 적용제외

# 개인정보 침해와 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유형

과태료 또는  
과징금

- 합동점검단(행안부 및 경찰청, 방통위, 교육부, 금융위, 복지부, KSIA 파견자 등)
- 실태 점검 결과, 법률 위반 기업 및 기관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행정 제재** 실시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
-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법정손배: 300만원 이하, 징벌적 손배: 손해액의 3배이내)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주요 내용에 대한 법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의 정지/금지를 위한 단체소송은 논외로 함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한 처벌은 논외로 함

# 개인정보 유형별 부적정 열람 예시

사례

| 유형             | 유형별 예시                                                                                                                                                                                                      |
|----------------|-------------------------------------------------------------------------------------------------------------------------------------------------------------------------------------------------------------|
| 호기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직원(전/현직)의 고용정보, 산재처리내역 열람</li> <li>▪ 대학동기의 급여가 궁금하여 고용정보 열람</li> <li>▪ 인턴직원 등 기간제직원이 입사 희망하는 기업의 급여 확인을 위한 고용정보 열람</li> </ul>                                    |
| 제3자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li> <li>▪ 구직중인 사촌동생이 ○○기업의 급여를 문의하여 보수총액 열람</li> <li>▪ 민원서류 결재완료 전 지인의 부탁으로 장해등급 등 개인정보 열람</li> </ul>                                    |
| 사적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채무자의 주소지 열람</li> <li>▪ 부동산 취득을 위해 경·공매 재산내역 열람</li> </ul>                                                                                           |
| 내부 행정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서무가 신규 전입자의 생일 확인을 위해 고용정보 열람</li> <li>▪ 연말정산 서류 작성을 위해 노동보험(고용정보) 열람 등</li> </ul>                                                                               |
| 유사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호흡기계질환</u> 취소사례를 분석하면서 간암 승인상병자 열람</li> <li>▪ 시설장의 근로자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소속 기관장 고용정보 열람</li> <li>▪ 타기관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 차 <u>공단 노동조합 전임자</u> 고용정보 열람</li> </ul> |
| 과도한 열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청구서 처리 시 재해자 외 청구인(신청인) 산재처리내역 열람</li> <li>▪ 가입서비스요원 퇴사처리 확인을 위해 고용정보검색 화면에서 공단 관리번호 입력 후 전체 조회</li> </ul>                                                       |
| 프로그램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수정된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li> </ul>                                                                                                                    |
| 교육용 열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직원(상담사) 교육을 위해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li> </ul>                                                                                                                          |
| <u>사전동의 미비</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하는 경우 등</li> </ul>                                                                                                            |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징계

사례

## ○ 가중 처벌 기준

- 목적외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에서 비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

| 비위정도<br>개인정보 구분 | 비위사항이 1개인 경우 | 비위사항이 2개인 경우 | 비위사항이 3개인 경우 |
|-----------------|--------------|--------------|--------------|
| 민감정보            | 강등           | 해임           | 파면           |
| 중요·고유식별정보       | 감봉           | 정직           | 강등           |
| 일반개인정보          | 견책           | 감봉           | 정직           |

## ○ 징계의 가중 및 감면 처벌

| 비위정도<br>개인정보구분 | 목적외 이용한 경우 |    | 목적외 이용<br>비위사항 1개 |    | 목적외 이용<br>비위사항 2개 |    | 목적외 이용<br>비위사항 3개 |
|----------------|------------|----|-------------------|----|-------------------|----|-------------------|
|                |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인정 |                   |
| 민감정보           | 정직         | 감봉 | 강등                | 정직 | 해임                | 강등 | 파면                |
| 중요·고유식별정보      | 견책         | 경고 | 감봉                | 견책 | 정직                | 감봉 | 강등                |
| 일반개인정보         | 경고         | 주의 | 견책                | 경고 | 감봉                | 견책 | 정직                |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 행정제재: 과태료 또는 과징금

## 점검 종류 및 절차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은 침해 우려가 큰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적 차원의 기획점검, 침해 신고나 민원 접수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 실시하는 특별점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는 서면점검으로 나뉜다.

출처:개인정보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 기획점검

#### 기획점검 절차



### 특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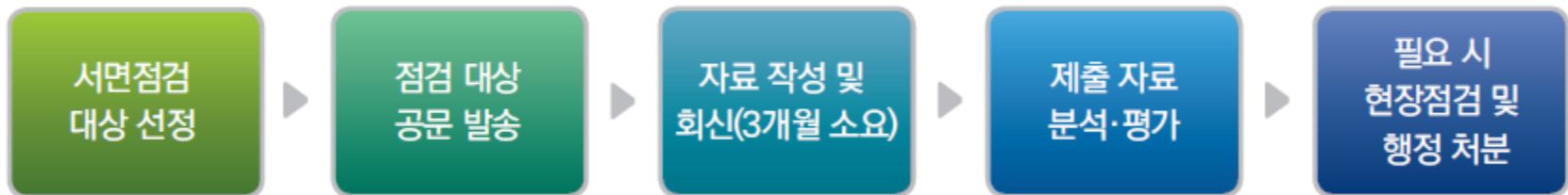
-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경우 실시,
- 언론 보도 및 민원 접수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해당 업체 또는 업종에 대하여 실시

# 행정제재: 과태료 또는 과징금

## 점검 종류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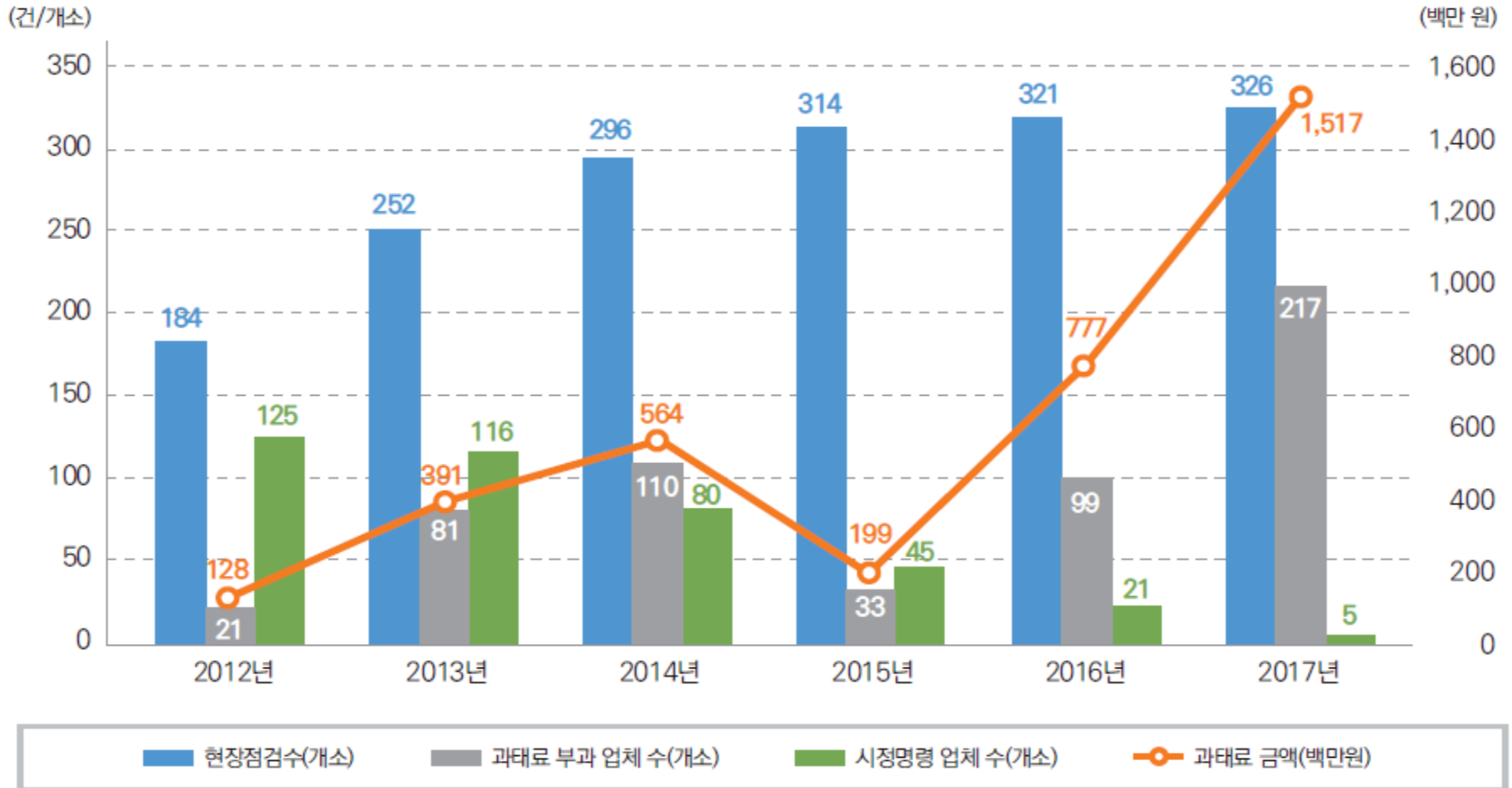
서면점검은 현장점검 대상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유량 및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절차는 수검 기관이 직접 점검표와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서면점검 절차



# 행정제재: 과태료 또는 과징금

2012~2017년 10월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추이



# 행정제재: 과태료 또는 과징금

## 행정 처분의 종류별 요건

### 행정 처분 종류 및 요건

| 종류   | 성격    | 처분 요건                           | 근거    |
|------|-------|---------------------------------|-------|
| 과태료  | 법 위반  | 과태료 부과 대상 규정 위반 시(5천~1천만 원)     | §75   |
| 과징금  | 법 위반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안전 조치 위반 시(5억 원 이하) | §34의2 |
| 시정조치 | 법 위반  | 침해·피해 발생 우려 시(과태료 규정 외)         | §64   |
| 개선권고 | 위반 아님 | 개인정보 보호실태 개선 필요 시               | §61   |
| 징계권고 | 법 위반  | 개인정보 관계 법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         | §65   |
| 공 표  | 법 위반  | 위반이 심하여 공공에 경종 필요 시             | §66   |

# 행정제재: 과태료 또는 과징금



행정제재

시정  
조치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치 명하는 것,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실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징계  
권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

공표

행정 질서 위반이 심하여 공공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경우 명단을 공표하여 사회적 낙인을 찍히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제재 수단

과징금

중요한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벌

과태료: 비교적 단순한 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벌

# 행정제재: 과태료 또는 과징금

##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 절차

| 위반 정도       | 산정 기준액   | 비 고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5천만 원 | 고의·중과실+10만 건 이상 위반                 |
| 중대한 위반행위    | 2억 3천만 원 | 고의·중과실+10만 건 미만 또는 경과실+10만 건 이상 위반 |
| 일반 위반행위     | 1억 원     | 경과실+10만 건 미만 위반                    |



# 행정제재: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의 처분 권한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

## 7가지 공표 기준

- ①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② 유출·침해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 ③ 다른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 ④ 유출·침해로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인 매매 또는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의 침해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
- ⑤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⑥ 행정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⑦ 위반행위 관련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A업체는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지원서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성된 지원서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업무용 이메일로 접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지원서 양식에 기재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상당수 수집하게 되었으나, 지원자들로부터 해당 개인정보 수집·처리 등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 지 원 서                                  |         |    |          |     |         |      |        |     |     |
|----------------------------------------|---------|----|----------|-----|---------|------|--------|-----|-----|
| 영남만 할라사진<br>(30x4cm)<br>최근6개월 이내<br>촬영 | 성 명     |    | 한 글      |     | 회 담 부 서 |      |        |     |     |
|                                        |         |    | 한 자      |     | 제 1 지관  | 전담인력 | 제 2 지관 |     |     |
|                                        |         |    | 영 문      |     | 상선통일    |      | 회담근무지역 |     |     |
|                                        | 전화번호    |    | 자 태      |     | E-mail  |      |        |     |     |
|                                        | 학 주 소   |    | 휴대폰      |     |         |      |        |     |     |
|                                        |         |    |          |     | 취미/특기   |      |        |     |     |
|                                        |         |    |          |     | 입사가능시기  |      |        |     |     |
| 학 려                                    | 재학기간    |    | 출신학교     |     | 전 공 학 역 |      | 소재지    |     | 비고  |
|                                        | ~       |    | 고등학교     |     |         |      |        |     |     |
|                                        | ~       |    | 대학       |     |         |      |        |     |     |
|                                        | ~       |    | 대학교      |     |         |      |        |     |     |
|                                        | ~       |    |          |     |         |      |        |     |     |
| 실 습 / 동 사                              | 기 간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 장 경 력                                | 근로기간    |    |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원여부    |    | 복 무 하단여부 |     |         |      |        |     |     |
|                                        | 군 복     |    | 복 무 보충연조 |     |         |      |        |     |     |
|                                        | 병 과     |    | 장 하단여부   |     |         |      |        |     |     |
|                                        | 계 급     |    | 예 징애용급   |     |         |      |        |     |     |
|                                        | 기 타     |    |          |     |         |      |        |     |     |
| 가 족 사 람                                | 성 명     | 관계 | 생년월일     | 직 업 |         | 연 령  | 공안사항   | 취득일 | 정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에 따른 벌칙**

**위반**

수집 이용 기준을 위  
수집한 자(저)

**▶ 처분 내용 : 5천만**

▶ 위반에 따른 벌칙

| 위반행위                                | 벌칙                           |
|-------------------------------------|------------------------------|
| 수집 이용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제15조제1항)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br>(제75조제1항제1호) |

▶ 처분 내용 :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2기권

## ▶ 개인정보처리자 시정조치 사항

출처:개인정보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시 필수 고지 사항 누락



C회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대응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회원 관리를 하고 있다. 회원 가입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한편, 절차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다소 간략한 형태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회원 가입자로부터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그에 따른 수집 목적, 보유기간의 고지 및 동의란 체크박스 구성된 다음 내용은 얼핏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필수 고지 사항 4가지 중 '동의 거부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아 불완전한 형태의 동의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가입자들은 동의 거부 권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은연중에 자신의

▶ **처분 내용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자 시정조치 사항**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000는 0000 서비스 회원가입, 고객센터 및 AS,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 · 이용 기간    |
|--------------------|-----------|---------------|
| 회원 식별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 아이디, 비밀번호 | 00년 00월 00일까지 |
| 고객상담 및 AS 관리       | 전화번호      | 00월 00일까지     |
| 서비스 변경사항 및 고지사항 전달 | 이메일       | 00년 00월 00일까지 |

필수 고지사항 중 '동의 거부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누락

▶ **위반에 따른 벌칙**

| 위반행위                                | 벌칙                        |
|-------------------------------------|---------------------------|
| 수집 이용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제15조제2항)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호)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전송 구간 암호화 미적용



A기관은 임대 주택에 대한 주택 관리 및 임대 업무 등을 하는 국가 단위 사업 기관이다. 다양한 유형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 보니 세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룹웨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A기관은 부금 관리 업무 처리를 위한 그룹웨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금 관리 업무의 경우 개인정보뿐 아니라 금전적 측면의 수치 또한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다루어야 하므로 보안이 특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장점검 결과, 이 그룹웨어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그룹웨어로 접속할 때의 비밀번호 송수신 과정에서 해당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하는 그룹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송수신할 때 암호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비밀번호 암호화 기술 조치를 꼭 하여야 한다.

```

Referer: ...
Accept-Language: ko-KR,ko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10.0; WOW64; Trident/6.0; rv:11.0) like Gecko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Accept-Encoding: gzip, deflate
Host: ...
Content-Length: 29
Connection: Keep-Alive
Cache-Control: no-cache
Cookie: _ga-GA1.3.132317866.1510103693; PHPSESSID=lnveee90bu46v1ff8jqddio571e...
Full request URI: ...
[HTTP request 1/1]
[Response in frame: 8]
File Data: 29 bytes
HTML Form URL Encoded: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 Form item: "user_id" = "testid"
> Form item: "user_pw" = "testpw"
    
```

**비밀번호 송·수신 간 비밀번호 평문 전송**

## ▶ 위반에 따른 벌칙

| 위반행위                     | 벌칙                           |
|--------------------------|------------------------------|
|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br>(제29조)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br>(제75조제2항제6호) |

▶ 처분 내용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자 시정조치 사항

#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단위 : 건)

| 종결 유형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조정 전 합의 | 21   | 32   | 40   | 21   | 15   | 28   | 70   |
| 조정성립    | 30   | 29   | 14   | 12   | 20   | 6    | 18   |
| 조정불성립   | 19   | 15   | 10   | 20   | 15   | 15   | 25   |
| 기 각     | 55   | 20   | 8    | 11   | 17   | 26   | 15   |
| 각 하     | 1    | 3    | 18   | 265  | 4    | 4    | 2    |
| 신청취하    | -    | 44   | 83   | 66   | 63   | 89   | 161  |
| 합 계     | 126  | 143  | 173  | 395  | 134  | 168  | 291  |

※ 2011년 기각결정 건수 55건 중 52건은 동일 내용으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분쟁조정 신청한 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건임

※ 2014년 각하결정 건수 265건 중에는 카드 3사 관련한 민원 249건 및 집단분쟁 3건 등이 포함되었음

출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 □ 연도별·침해 유형별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 '17년 처리 현황

(단위 : 건)

| 침해 유형                    | '17년 |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29   |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7    |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75   |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10   |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36   |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21   |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33   |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32   |
| 침해사실 확인곤란                | 48   |
| 합 계                      | 291  |

○ '11년~'16년 처리 현황

(단위 : 건)

| 침해 유형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19   | 76   | 43   | 32   | 37   | 49   |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12   | 19   | 21   | 19   | 18   | 26   |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76   | 17   | 26   | 303  | 9    | 14   |
|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 4    | 2    | 4    | 2    | -    | 13   |
|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 2    | 1    | 13   | 16   | 6    | 13   |
|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5    | 10   | 13   | 11   | 2    | 12   |
| 기타(과도한 수집, 사생활 침해 등) | 8    | 18   | 53   | 12   | 62   | 41   |
| 합 계                  | 126  | 143  | 173  | 395  | 134  | 168  |

# 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 및 금지행위(제59조)

## 제3장~제7장 규정 적용 제외 대상(제58조)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제59조)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의무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전. 현직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 등

# <참고> 벌칙 및 과태료

## ○ 실체법 위반은 징역형 또는 벌금, 절차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 구분    | 주요내용                                                                        | 처벌 및 벌칙                |
|-------|-----------------------------------------------------------------------------|------------------------|
| 수집·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18조, 제19조, 제26조)                                           |                        |
|       |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3조)                                                          |                        |
|       |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4조)                                                        |                        |
|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제22조)                                |                        |
|       |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                        |
|       |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 제26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                        |
|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                        |
|       |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 받은 자(제2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구분       | 주요내용                                                                         | 처벌 및 벌칙                |
|----------|------------------------------------------------------------------------------|------------------------|
| 제공·위탁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18조, 제19조, 제26조)                                            |                        |
|          |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 제26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안전관리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위반) |                        |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제2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                        |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

| 구분      | 주요내용                                                               | 처벌 및 벌칙                |
|---------|--------------------------------------------------------------------|------------------------|
| 정보주체권보호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                        |
|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                        |
|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                        |
|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                        |
|         |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제63조)                                      |                        |
|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                        |
| 파기      |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Three small white squares are located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blue header area, resembling window control buttons.

**감사합니다!**